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73
----------	-------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일부 감면하며,
-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3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4.) 심의시 제명을 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수정 가결

나. 상위법 제정에 따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 규정(안 제1조)

- 스포츠클럽법(법률 18252호, 2021. 6. 15. 제정) 시행 : 2022. 6 .16.

다.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정의 규정(안 제2조)

-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스포츠클럽법 제6조, 제9조)

구분	등록클럽	지정클럽
대상	모든 체육활동 단체(법인 포함)	등록 스포츠클럽
최종권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시·군·구체육회	대한체육회
관련조항	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법 제9조
신청주기	매월 14~16일(3일간)	연 1회

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
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위탁 근거 마련
 - 스포츠클럽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재정
지원 및 체육시설 위탁
-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일부 감면

마. 지원신청 및 회계관리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제5조)

- 보조금 신청 및 결정,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관계
증빙서류 보관의무 부여

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6조~제7조)

- 매년 한 차례 이상 스포츠클럽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사용시 환수 절차 마련

개정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결과 : 【붙임 4】

- 입법예고 : 2023. 3. 22. ~ 2023. 4. 12.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안산시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안산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를 따른다.

제8조(준용) 지정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체육진흥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지원팀장 진상규
자	담당자 성명·전화	김동희 (행정 2107)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173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9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회계관리에 대한 증빙서류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목 “(지원 및 범위)” 를 “(책무 및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지원할 수 있고” 를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로, “있으며” 를 “있고” 로 수정함. (안 제3조)
- “보관” 을 “5년 간 보관” 으로” 로 수정함. (안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로 수정함. (안 제7조제2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 및 범위)”를 “(책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지원할 수 있고”를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로, “있으며”를 “있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관”을 “5년 간 보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u>지원 및 범위</u>)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u>수립·지원할 수 있고</u>,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u>있으며</u>,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u>책무 및 지원</u>) ① ----- ----- ----- ---<u>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u>,--- ----- ----- <u>있고</u>,----- ----- -----.</p>
<p>제5조(<u>회계관리</u>)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u>보관</u>하여야 한다.</p>	<p>제5조(<u>회계관리</u>) ② ----- ----- ----- ----- ----- ----- <u>5년 간 보관</u>----- --.</p>
<p>제7조(<u>환수</u>)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u>제31조</u>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를 따른다.</p>	<p>제7조(<u>환수</u>) ②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u>제34조</u>----- -----.</p>